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공모 센터장 내정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공모에 참여할 역량 있는 센터장(내정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년 01월 03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예정직위	채용인원	고용형태	직무내용	근무지
소속시설	센터장	1	계약직 (계약기간: 수탁 확정일~수탁 종료일)	센터 업무총괄 및 대외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전까지 센터장 내정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3456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공모에 한해서 참여

2. 채용형태 및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육아종합 지원센터 센터장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총괄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

3. 응시자격 조건

☐ 채용기준

☒ 공통기준

- (기 준 일) 공고일 현재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59세 이하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거주지) 현재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직위	응시자격
센터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 제1호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대상	1.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접수일까지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자

☐ 응시자격 제한사항

1.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라.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다음의 사회서비스원 직원 결격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인사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형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가산점 특전 및 우대사항

구분	대상	점수	증빙서류
장 애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5점	장애인 증명서
법 령 에 의 한 취업지원 대 상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중복시 유리한 내용 한가지만 적용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수행경험자	3점	경력 증명서

※ 가산점은 중복 인정되나 최대 10점까지 적용됨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을 근거로 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발표 : 2022. 01. 13.(목) /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일시) 2022. 01. 14.(금) / 오전(시간 개별통지)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제주시 애조로 1254)
- (인성검사 평가기준)
 - 인성검사 종합결과 S, A, B 등급자를 선발함(C, D 등급 불합격)
 - 인성검사 응답 신뢰도 판정 ‘상’, ‘중’에 해당하면서
조직적합도 판정 ‘상’, ‘중’에 해당하는 자(‘하’ 등급 불합격)
- (면접시험 평가기준) 업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인성 및 태도, 종합평가 등
- 면접 평가항목 배점기준

업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인성 및 태도	종합평가	합계
30	30	20	20	100

- (면접시험 진행방법) 운영 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15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면접 질의응답 실시

※ 면접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 ①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②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면접시험 평점요소 중 업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인성검사, 종합평가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자 선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 (일시) 2022. 01. 14.(금) / 18:00 이후
- 최종합격이후 제출서류: 채용신체 검사서,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동의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동의서, 관계법령 및 재단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접수방법

- 지원신청 :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접수기간 : 2022. 01. 03.(월) ~ 2022. 01. 1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jejupass@jeju.pas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문의전화 : 064-742-3500(복지시설팀 담당자)

6. 채용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2. 01. 03.(월) ~ 22. 01. 12.(수) 18:00	내 · 외부홈페이지 공고
지원서접수	22. 01. 03.(월) ~ 22. 01. 12.(수) 18:00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2. 01. 13. (목)	개별통보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22. 01. 14. (금) 오전 중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22. 01. 14. (금) 18:00	합격자 개별통보
내정자 임면동의 및 공모참여	22. 01. 15. (토)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 준비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센터장	응시원서	[별지1]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별지2]서식에 의거 제출
	경력기술서	[별지3]서식에 의거 제출
	운영계획서	[별지4]서식에 의거 제출
	발표자료(PPT)	15분 이내 MS-Office

-자기소개 및 5년간 사업계획	2016버전으로작성하여 3부 출력 및 원본파일 USB 제출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재직/경력증명서	필수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해당자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5]서식에 의거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가산점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센터장 수행(경력증명서)	

8. 보수 및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기준을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기준을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제외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되지 않은 지원자는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미착용시 응시 제한)
 - ※ 단, 감독관이 지원자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함.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붙임: 채용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 채용 응시원서
---	---

응시분야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접수번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연락처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관련 법령 조항호 기재 ☐ 미해당			
		장애인	☐ 해당	☐ 미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 미해당			

자격 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채용분야와 관련있는 자격 기재						

경력 및 경험 사항	구분	소속 기관명	근무(활동)기간	주요역할/지위	주요활동내용/ 담당업무
	☐ 경력		. . .부터		
	☐ 경험		. . .까지		
*증명할 수 있는 직업경험 또는 실습, 자원봉사 등의 경험 순으로 기재					

수상 실적	상훈(명)	훈격	수상주체	수여기관	수상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_____

지 원 자 : _____ (인)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자 기 소 개 서
---	--------------------

채용분야	☐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작성요령 - 본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윤리관, 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입사 후 포부 등을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 서식을 이용해 주시고 작성 마지막 장에 반드시 작성일자와 작성자 성명,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는 서비스원에서 기재하니 공란으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이름, 연령, 성별, 학교 등)가 포함된 내용은 기재금지, 대리 작성 및 허위시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경력기술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경 력 기 술 서
---	-----------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경력기간	기관명	직책	담당업무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1	기관(단체)명 :	근무기간 : ~	직위(직책) :
담당 업무 [작성요령]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경력별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공고문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잘 나타나도록 담당업무, 본인의 역할, 주요활동 내용 및 성과, 본인의 성과로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정도를 기술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작성			
2	기관(단체)명 :	근무기간 : ~	직위(직책) :
담당 업무			
3	기관(단체)명 :	근무기간 : ~	직위(직책) :
담당업무(교육내용)			

운 영 계 획 서

※ 경영방침 및 5개년간 센터 운영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I. 사업명 :

II.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별지작성가능)

- 사업목표
- 운영방침

III. 조직구성

-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IV. 사업추진계획(년도별 구분 작성)

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지역사회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 보육사업 안내에 기초한 사업(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참조)

- 주요실별(시간제보육실, 상담실, 교육실) 운영 및 공간 구성계획, 특성화 프로그램, 안전관리계획서, 평가계획 포함하여 작성

※ 연도별(2022~2027년)연간 세입·세출예산서(안) (서식3) 작성

V. 센터운영

1.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센터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6. 시설물관리(부속시설 포함)에 관한 계획
7. 연간 운영 · 관리 평가 계획(방법)

VI.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4. 지역 특색 사업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위·수탁사업 및 소속시설 직원채용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 . .
----	--	------	-------

본인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위·수탁사업 및 소속시설 직원 채용에 응시함에 따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목적, 보유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수집근거	활용목적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절차 진행	서류, 면접 전형 진행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사항, 수상실적, 자격증 보유현황,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여부	5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고지 】

○ 본 사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3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수집 및 제공근거	보유기간
경력증명서, 자격증 발급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발급번호	경력,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채용절차 진행	조회 후 즉시 파기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채용전형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